

# 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고 일시	2023.1.4.(수) 조간 2023. 1. 3.(화) 12:00	배포 일시	2023. 1. 3.(화)		
담당 부서	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	책임자	과장	홍승령	(044-202-3560)
		담당자	사무관	이효진	(044-202-3571)

##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.

- 부모급여 신청하세요! :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-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.

### 1 부모급여 소개

-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,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.

-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, 만 1세가 되는 아동\*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,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,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.

\*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('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)
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,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.

\* 어린이집 만 0세반('22.1.1 이후 출생 아동) 부모보육료 51만 4,000원

-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,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.

## 2 부모급여 신청방법

-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.
-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,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.
- 부모급여는 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\*하거나, ②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\*\*할 수 있다.
  - \*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  - \*\*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,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 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신청
- 또한,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

### < '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' 신청 방법 (온오프라인) >

- △ (온라인)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→ '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'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
- △ (주민센터 방문) 출생신고서 제출 시, 첫만남이용권·아동수당·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

- 만약,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.
-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,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.
-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(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)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.

- 다만, 2023년 1월 기준 만 0세('22.2월생~'22.12월생)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,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.
  - \*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, **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(부모급여(현금) → 부모급여(보육료))시 계좌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**
-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(수)부터 1월 15일(일)까지 복지포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,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.
  - \* 복지포(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) → 서비스 신청 → 민원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계좌변경
-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(1.4~1.15)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.
  - 1월 15일(일)까지 입력하지 않으면, 1월 25일(수)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.

###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

-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(수)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.
  -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.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**바우처**로 받는다.
  -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,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.

- 다만,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.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, 51만 4,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,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.

#### 4 부모급여 기대효과

-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,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.
-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,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,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한다.

##### ◇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A님(남)

- 직장인 A님(남)은 내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.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**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,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.**

\*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일시금,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도 지급

##### ◇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던 B님

-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님(여)은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다.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,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다. 2023년부터는 **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 6,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니,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.**

◇ 출산 직후 구직활동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C님

- C님(여)은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.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출산 3개월 뒤에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 일을 구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,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, 다소 여유가 생겨서 좀 더 긴 기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.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해서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.

-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“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,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강조하면서,
- “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,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 부모급여 관련 안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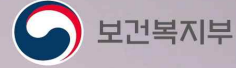
- 보건복지부 129, 044-202-3571/3572/3554/3557/3583/3594
-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-1661-5666
-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-3232
- ※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-2514, 02-2100-6365, 6325, 6309

- <붙임> 1. 부모급여 제도 안내 포스터  
2. 부모급여 신청 안내 카드뉴스

<별첨> 부모급여 도입 관련 FAQ

붙임 1

부모급여 제도 안내 포스터



2023년

**부모급여**를 도입하여  
모든 영아가족에게  
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.

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도입됩니다.

▪ 만 0세 월 70만원, 만 1세 월 35만원 지급

부모급여 대상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,  
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

\*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

**붙임 2**

**부모급여 신청 안내 카드뉴스**

보건복지부 2023.01.04. 기준

# 모두의 행복을 키웁니다.

2023년 부모급여 가이드

부모의 결심, 부모급여로 안심

보건복지부 2023.01.04. 기준

##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.

### 2023년 부모급여 가이드

- 지급 대상** 만 0~1세 아동  
※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(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)
- 지급 금액**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| 1세 아동 월 35만원  
※ 24년 만 0세 월 100만원, 만 1세 월 50만원 예정
- 지급 시기** 23년 1월 25일 이후 (매월 25일 지급)

보건복지부 2023.01.04. 기준

- 신청 기간** 23년 1월 4일~  
※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,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 신청 필요 없음
- 신청 방법** 복지포(www.bokjiro.go.kr) / 정부24(www.gov.kr)  
읍·면·동 주민센터(방문 신청)  
※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,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
- 유의 사항**
  -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,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
  -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
※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.4만원 + 현금 18.6만원